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 안 번 호	1018

제안년월일 : 2019년 8월 28일
제 안 자 : 교 통 위 원 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박상구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5호), 추승우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1호), 이병도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88호)을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2019.8.28.)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박상구 의원 외 10명, 추승우 의원 외 9명, 이병도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 근거 및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근거,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공용주차장 요금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바,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서울시 투자사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의2)

나,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80% 감면 등 규정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를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1호마목)

다.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비고〉제4호)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주차장 설치 지원) 시장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지역(재건축·재개발 지역 제외)
2. 전통시장 주변 100m 이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

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별표 1의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신 설〉 제4조의2(주차장 설치 지원) 시장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지역(재건축 · 재개발 지역 제외) 2. 전통시장 주변 100m 이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9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 ----------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	1. ---------- ---------- ---------- ---------- ---------- ----------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2. ~ 12. (생략)	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표 생략)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표 현행과 같음)
〈비고〉	〈비고〉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4. ------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 ---------- **50% 범위** ---------- ---------- ---------- ----------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5. ~ 10. (생략)	---------- ----------. 5. ~ 10. (현행과 같음)